

에는 3년 이내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함(법 제63조제2항제1호·제3항 및 제64조제2호).

바. 육아휴직 신청기간을 1세 미만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서 3세 미만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때까지 확대함으로써 여자공무원의 모성보호를 도모함(법 제63조제2항제4호).

사.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재임용되거나 재직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등에는 이미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법 제66조의2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경비업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대중
2002년12월18일
국무총리 김석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이근식

◎法律 第6787號
경비업법중개정법률

경비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특수경비업자는 이 법에 의한 경비업과 경비장비의 제조·설비·

판매업,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관련업의 영업을 허가하는 기이 된다.

제19조제1항제3호중 “경비업”을 “경비업 및 경비관련업”으로 한다.

법률 제6467호 경비업법개정법률 부칙 제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비업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경비업자의 대부분이 경비업외에 다른 업무를 겸업하고 있는 경비업계의 현실정에 맞추어 이 법에 의한 경비업외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경비업가이 겸업금지이무른 특수경비업자로 한정함으로써 경비업자의 영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경비분야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공무원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김대중
2002년12월18일
국무총리 김석수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이근식